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2. 3. 28.(월) /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	담 당 자	• 과장 강태석, 사무관 김준, 주무관 진해룡 • ☎ (044) 201-3366, 3367	
<b>보 도 일 시</b>		2022년 3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7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충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.

###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」 입법예고(3.28~5.9) 및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 행정예고(3.28~4.18.)

- 지난 '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(사후확인 제도)를 위한 「주택법」이 개정되었으며, '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충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」에 대한 입법예고(3.28.~5.9) 및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」에 대한 행정예고(3.28.~4.18.)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>

- 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(경량충격음 49dB, 중량충격음 49dB)
  -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\*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하였다.

\*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성능기준 마련 연구용역('21.6.~'22.2. / KCL)

-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“58dB(데시벨) → 49dB”, 중량충격음은 “50dB → 49dB”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.

\* (경량충격음)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
 (중량충격음)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

- 이에 따라,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·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.

##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

-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,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, 객관성·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\*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하였다.

\* 분양정보를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할 수 있는 기(既) 개발 프로그램 활용

- 또한,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## ③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

-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,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,

-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,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,

-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.

#### ④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

-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\*하도록 규정하였다.

\*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검토 중

※ <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 > 성능검사기관 신청서 마련

#### <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(고시) >

##### ①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(ISO) 반영

-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(20.12.)한 국제표준(ISO)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하였다.
- 우선,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, 중량충격음은 뱅머신(타이어)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(고무공) 방식으로 변경하였다.
- 다음으로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,
  -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.

#####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조정

- 앞서,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면서 “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”의 하한치 또한 경량충격음 “58dB → 49dB”, 중량충격음은 “50dB → 49dB”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.

\* <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> ①번 내용 참고

- 이와 함께,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~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,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다.

구분 등급	현행		→	개정안
	경량충격음	중량충격음		경량·중량충격음
1급	$L^* \leq 43$	$L \leq 40$		$L \leq 37$
2급	$43 < L \leq 48$	$40 < L \leq 43$		$37 < L \leq 41$
3급	$48 < L \leq 53$	$43 < L \leq 47$		$41 < L \leq 45$
4급	$53 < L \leq 58$	$47 < L \leq 50$		$45 < L \leq 49$

\* L = Level

### ③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

-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\*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,

\* 스티로폼(EPS), 고무(EVA), EPS + EVA 등의 자재를 주로 사용

-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\*은 삭제하는 한편,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\*\*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다.

\* (삭제) 밀도, 동탄성계수, 흡수량 등 / \*\* (유지) 가열 후 치수안전성, 잔류변형량 등

□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\* (의견제출처)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,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, 팩스 044-201-5684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제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건설공급과 김준 사무관(☎ 044-201-3366), 진해룡 주무관(☎ 044-201-33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